

EU의 AI Act 승인, 우리나라의 대응은?

[애자일] KIAT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('23.7.3)



- ◆ 유럽연합 이사회(European Council)에서 **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최종 승인('24.5)됨에 따라 단계별 적용 후 '26년 전면 시행 예정**
- ◆ 국내의 AI 산업 육성 중요성 확대에 따라 EU 등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에 대비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 육성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**우리나라 현실에 기반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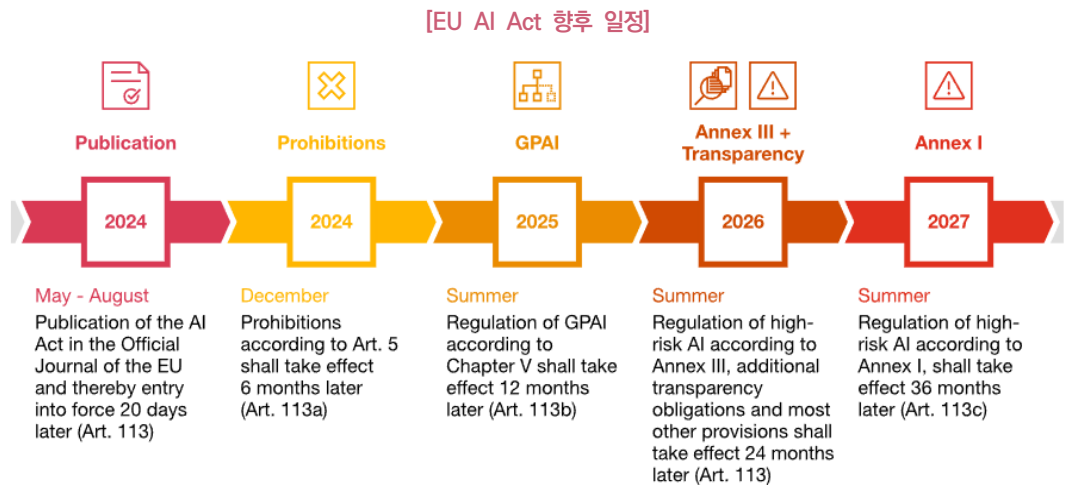
1. EU AI Act 추진경과

- **(추진경과)** '21년부터 3년간의 입법 논의 후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「유럽연합 인공지능법(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)」 가결('24.3), 이후 **유럽연합 이사회의 최종 승인('24.5)**
 - ('21년 4월)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uropean Commission, 행정부 기능 담당)는 **세계 최초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을 발의**
 - * EU의 AI 관련 정책 논의는 '18년 4월 AI 기술개발과 적용에 대한 종합계획인 '유럽의 AI 전략(AI for Europe)' 수립부터 시작되었으며, 12월 AI 기술개발 및 배포 촉진을 위한 'AI 합동계획(Coordinated Plan on AI)'를 발표함
 - * '19년 4월 '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기준(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)' 발표, '20년 2월 'AI 백서(White Paper on AI)' 등의 정책 및 초기 논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법으로 발전함
 - ('22년 12월) 유럽연합 이사회(집행위원회 제안 심의·의결 역할)에서 AI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 및 기본권 존중을 촉구하기 위한 **인공지능법 수정안 마련**
 - * AI 시스템의 정의, AI 규제, AI 시스템의 고위험 분류 및 요구사항, 범용 AI 시스템 등의 내용 포함
 - ('23년 6월) 유럽의회(European Parliament, EP)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**인공지능법 수정안 채택**
 - * 생체 감시, 감정 인식 등을 위한 AI 전면 금지,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 시스템의 데이터 저작권 표시 의무,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은 고위험으로 간주 등의 내용 포함
 - ('23년 12월)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주도 하에 집행위원회·의회·이사회 간 3자 협상을 통해 **인공지능법 최종안 합의**
 - * 이 과정에서 독일, 프랑스 이탈리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유럽연합의 AI 기업의 경쟁력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. 기반모델(Foundation Models, FM /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모델)의 직접적인 제재에 반대하며, 제한적 규제를 행동 강령을 통한 자율 규제로 낮출 것을 주장함

- ('24년 2월) 인공지능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인공지능 사무국(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)이 통신 네트워크, 콘텐츠 및 기술 사무국 산하 위원회 내에 출범
- ('24년 3월)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법안(세계 최초의 포괄적 AI법) 가결
- ('24년 5월)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인공지능법안 공식 채택
 - ※ 자료 :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(<https://artificialintelligenceact.eu/developments>) 홈페이지
- (향후일정) '24년 7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유럽연합 공식저널에 게재되며, 이는 새로운 법률의 공식 통지 역할을 하게 됨. **게재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**
 - 일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,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'26년 이후 전면 시행

| | |
|--------|---|
| 6개월 후 | (금지조항) 제1장, 제2장(허용할 수 없는 위험 AI에 대한 금지) 적용 |
| 12개월 후 | (GPAI(General Purpose AI) 관련 조항) 제3장 4절(알림 기관), 제5장(범용 AI 모델), 제7장(거버넌스), 제12장(기밀유지 및 처벌), 제78조(기밀유지) 적용 / 제101조 제외 |
| 24개월 후 | (전면시행) AI법의 나머지 부분이 적용됨 |
| 36개월 후 | (고위험 AI 규제) 제6조 제1항(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의무) 적용 |

※ 자료 : 유럽연합 인공지능법(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) 제113항을 기준으로 재구성



Source: Kai Zenner

※ 자료 : Navigating the Path to EU AI Act Compliance(PwC Germany, '24.6)

2. EU AI Act 주요내용

※ 2장(EU AI Act 주요내용)은 13개의 장(Chapter), 13개의 부록(Annex), 180개의 설명 조항(Recital)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전문('24.4 기준) 중 주요 조항을 발췌하여 재구성함

- **(목적)** ①EU의 가치에 따라 **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(AI)의 도입 촉진**, ②민주주의, 법치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건강, 안전, 기본권을 포함한 **높은 수준의 보호 보장**, ③**혁신을 지원함으로써 내부 시장의 기능을 향상**

- AI 기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,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여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는 한 회원국이 AI 시스템의 개발, 마케팅 및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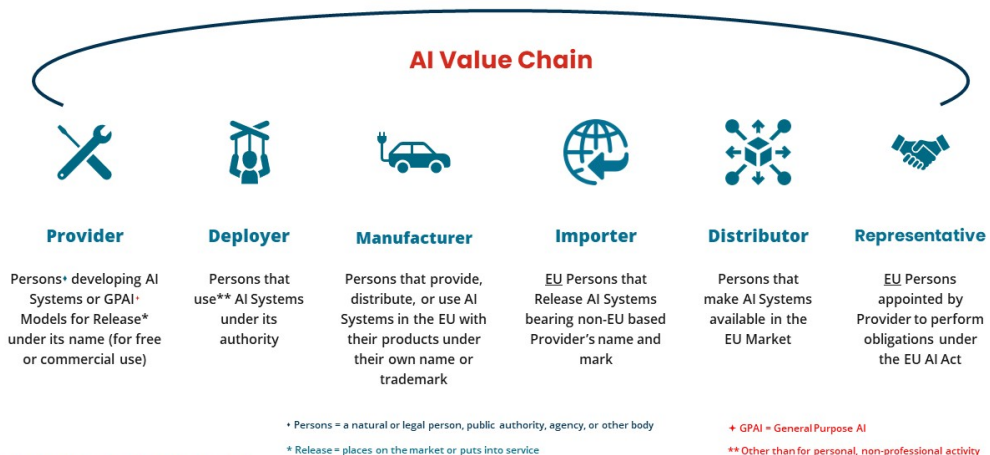
- **(AI 시스템의 정의)**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서 설치 및 실행 이후에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, **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신된 입력을 바탕으로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, 콘텐츠, 추천 또는 결정과 같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할 수 있음**

*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단순한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프로그래밍 방식은 AI 시스템에 미포함

- **(적용범위)** EU 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AI 시스템에 적용(AI 시스템이 EU 내에서의 구축·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문에 걸쳐 적용, 어떠한 경우에는 AI 법이 해당 법 이전 시장에 출시된 AI 시스템에도 적용). **AI 가치사슬의 모든 행위자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부과**

[AI 법안 내 다양한 주체의 밸류체인]

The Who's Who under the EU AI Act



BAKER DONELSON

※ 자료 : Who's who under the EU AI Act(BAKER DONELSON, '24.3)

[AI 법안 내 다양한 주체의 정의]

| 주체 | 정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공자 (Provider) | 자신의 이름으로 무료 또는 유료의 AI 시스템 또는 출시용 GPAI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(법인, 공공기관, 기타 기관 등) |
| 배포자 (Deployer) |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(법인, 공공기관, 기타 기관 등) * 개인적, 비전문적 활동 제외 |
| 공인 대리인 (Authorized Representative) | EU AI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AI 시스템 제공자가 임명한 EU 지역의 사람(법인, 공공기관, 기타 기관 등) |
| 수입자 (Importer) | EU가 아닌 지역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AI 시스템을 EU에 출시하는 EU 지역의 사람(법인, 공공기관, 기타 기관 등) |
| 유통업자 (Distributor) | EU 시장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람(법인, 공공기관, 기타 기관 등) |
| 제품 제조업자 (Product Manufacturer) | EU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제품과 함께 AI 시스템을 제공, 배포 또는 사용하는 사람(법인, 공공기관, 기타 기관 등) |
| 운영자 (Operator) | 위의 모든 용어(제공자, 배포자, 공인 대리인, 수입자, 유통업자 또는 제품 제조업자)를 지칭하는 일반 용어 |

- (적용제외) 군사 목적, 과학적 연구,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개발 및 사용되는 AI 시스템

- (위험도)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4단계^①허용 불가능한 위험, ^②고위험, ^③제한적 위험, ^④최소 위험)로 구분하여 단계별 영향 수준에 따라 의무사항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. 위험도는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기반함

- (허용 불가능한 위험, Unacceptable risk : **활용금지**) 기본권 침해, 차별 조장 등 EU 가치에 반하는 행위

* 행동 조작, 사람의 취약성을 함부로 이용, 공공기관에 의한 사회적 점수 매기기, 법 강화를 위한 실시간 생체 인식 데이터 오용

- 인간의 잠재의식을 조작하거나 기만하는 기술로 의사결정 능력을 손상시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시스템
- 연령, 장애, 특정한 사회·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취약성을 악용해 개인이나 집단을 착취하고 행동을 조작하는 시스템
- 인간의 생체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종, 정치적 견해, 노동조합 가입, 종교적 신념, 성적 지향 등 개인적 속성을 추론하여 인간을 분류하는 시스템
- 사회적 행동이나 특성을 기반으로 인간이나 집단을 평가 또는 분류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(social scoring) 시스템
- 안면 인식 CCTV 등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 : 중대 범죄 용의자 수색을 위해 사법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됨
- 인터넷이나 CCTV 영상으로부터 무차별적 이미지 수집을 통해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시스템
-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여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예측하는 치안 시스템 : 단, 전과기록 등 범죄 행위와 직접 연관된 사실에 기반한 평가 시스템은 허용됨
-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인간의 감정을 추론하여 활용하는 시스템 : 의료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임

※ 자료(4단계 위험별 예시) : EU AI법(AI act)의 주요 내용과 미디어 업계 영향, 시사점(한국언론진흥재단, '24.3)

- (고위험, High risk : **적합성 평가 필요**) 건강이나 안전, 환경, 기본권 등에 높은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행위로, 매우 높은 수준의 의무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시장 출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

- AI 시스템이 제품의 안전 구성 요소로 사용되거나 제3자의 적합성 평가를 받는 제품인 경우 : 기계, 완구, 승강기, 전파기기, 고압기기, 케이블카, 자동차, 의료기기 등
- 원천 금지된 시스템('수용 불가능한 위험')을 제외한 모든 생체 인식·분류 시스템 : 인간에 대한 원격 생체정보 식별을 통해 연령, 민족, 성별, 장애 관련 편향된 결과와 차별을 유발할 수 있음
- 도로 교통, 수도, 가스, 난방, 전력 공급 등 핵심 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사용되는 시스템 : 고장이나 오작동이 생명이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교육이나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접근 또는 허가,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나 교육 대상자의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
- 고용이나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 : 채용, 승진, 해고의 결정, 업무 할당, 성과와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
- 필수적 공공·민간 서비스의 접근·향유와 관련된 시스템 : 의료, 사회보장 서비스 수혜 자격 평가 및 경찰·소방·응급 서비스 출동의 우선순위 설정 등
- 법 집행기관이 인간에 대한 개별적인 범죄 피해 위험 평가, 거짓말 탐지, 증거의 신뢰성 평가를 하는 시스템
- 이민, 난민, 출입국 관리 시스템 : 입경한 사람에 대한 거짓말 탐지나 위험 평가, 서류의 신뢰성 평가 등
- 사법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

- '고위험' AI 시스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출시할 수 있음

- AI 시스템이 건강, 안전, 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식별·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위험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해야 함
- 훈련·검증·시험 데이터셋의 관련성, 대표성, 무오류성, 완전성을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적용을 받아야 함
- 의무 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기술 문서(technical documentation)를 출시 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
- 로그를 자동 기록·보관해야 함
- 활용자들이 해석·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목적·성능·위험성·변경 사항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함
- 인간에 의해 건강, 안전, 기본권에 대한 위험성을 감독받아야 함
- 합당한 수준의 정확성(accuracy), 견고성(robustness), 보안(cybersecurity)을 달성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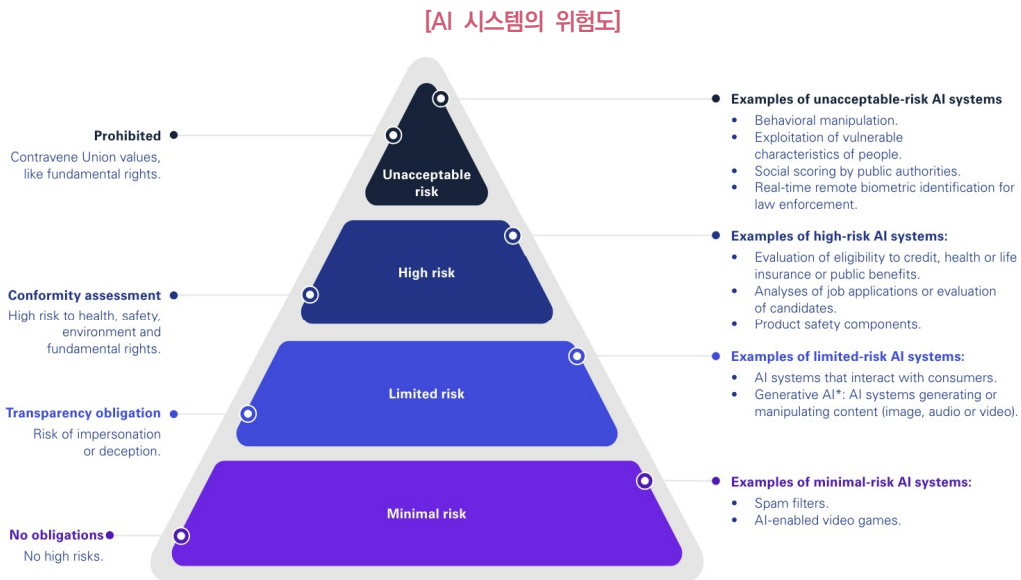
- (제한적 위험, Limited risk : **투명성 의무 충족**) 도용이나 사기 위험이 있는 행위로, 범죄 인지·예방·수사를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명성 의무 대상이 됨

* 소비자와 관련 있는 AI 시스템, 생성형 AI

- 인간과 상호작용하도록 의도된 AI 시스템 :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설계·개발되어야 함
- 감정 인식 시스템과 생체정보 기반 범주화 시스템 : 시스템에 노출된 인간에게 시스템 작동에 대해 알리고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해야 함
- 딥페이크로 이미지, 오디오, 동영상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 :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·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

- (최소 위험, Minimal risk : **별도 의무 없음**) 별도의 위험이 없는 행위로, 별도의 법적 규제 없이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하지만, 투명성 등 자율적인 행동 강령을 수립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

* 스팸 메일 필터링, AI로 구동되는 비디오 게임



※ 자료 : KPMG International, Decoding the EU AI Act(24.2)

- **(처벌)** 제5조 위반 규정에 따라 AI법 위반 시 최대 3,500만 유로(약 520억원)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%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

AI법 금지조항 위반 최대 3,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(수익)의 7%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

고위험 의무조항 위반 최대 1,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(수익)의 3%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

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최대 75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(수익)의 1.5%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

- **(지원제도)** AI 규제 조항 이외에도 제6장 혁신 지원방안(Measures in Support of Innovation)을 통해 AI 생태계 개발 및 중소기업 등 **시장 접근 개선**을 위한 **규제샌드박스** 등의 지원제도 포함
 - **(규제샌드박스)** EU 회원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하나 이상의 “AI 규제샌드박스”를 만들 것을 요구함 (발효 후 24개월 동안 / 다른 회원국과 공동 설립 가능)
 - *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 前 개발, 테스트 및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통제된 환경 제공 필요
 -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제공자는 샌드박스의 실험 결과에 따라 제3자에 가해지는 모든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하나, 당국이 제시한 계획, 참여약관 등 지침을 준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
 - 공공안전, 건강, 환경보호, 에너지 지속 가능성, 교통안전 및 공공행정 등 공익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
 - **(실제 테스트)** 규제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환경에서 고위험 AI 시스템 테스트가 가능함
 - 1) 테스트가 진행될 EU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 테스트 계획을 제출해야 함
 - 2) 테스트는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, 필요시 추가로 6개월 연장 가능
 - 3) 테스트는 취약 그룹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, 수집된 데이터가 적절하게 보호되는지 확인해야 함
 - 4) 테스트 중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고해야 하며,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테스트를 중단해야 함
 - **(중소기업/스타트업 지원)** 중소기업의 AI 규제 이해 및 준수를 위한 지원
 - AI 규제샌드박스(새로운 AI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)에 대한 우선적 접근 제공
 - AI 규제에 대한 교육 제공, 전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조언 제공, 표준개발 지원 등

3.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

- **(미국)** 규제 위주의 EU와 비교하였을 때, **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유지하면서 자율 규제** 등으로 AI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며, 민간의 참여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
 - 바이든 美 행정부는 AI 시스템의 개발 및 잠재적인 위험 보호 등을 위한 「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 제14110호」 발표('23.10)
 - * Executive Order 14110 : Safe, Secure,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
 - 국가안보, 경제 보건 등에 위협을 주는 AI 모델 개발자는 훈련 단계부터 정부에 알려 정부검증 전문가팀(AI 레드팀)의 안정성 평가를 통해 정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 - *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감지하는 방법, 원본/공식 콘텐츠를 인증하는 방법 및 표준 포함
 - 또한, 국방물자생산법(Defense Production Act)을 근거로 美 기업의 AI 기술을 이용하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에 관한 결과를 보고

- 가장 강력한 조치로 美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외국 고객 명단 신고를 의무화하여 美 행정부가 AI 개발기업 정보 획득 및 AI 산업에서의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
 - *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(NIST) 내 국가안보, 공공안전 등 AI 안전에 대한 연구, 콘텐츠 인증 및 합성 콘텐츠 평가 및 위험 완화를 위한 개발지침 등을 개발하는 미국 AI 안전연구소(The US AI Safety Institute, US AISI) 설립
- **(중국) 광범위한 AI 규제 대신 보다 직접적이고 엄격한 규제 방식을 채택함.** 알고리즘 등록 및 심사제도, AI 콘텐츠 검열, 데이터 검증 등 구체적 규제 조치 시행
 - 中 사이버 공간 관리국(CAC,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) 등 7개 주요 중앙 정부기관은 **“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조치”** 공동 발표('23.8)
 - * 조치는 중국에서 생성 AI 기술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성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(Generative AI Technologies, Services, Provider, User)
 -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는 의도를 반영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및 요구사항 완화 등의 내용과 동시에 개인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, 콘텐츠 관리·표기 등
 - * 기존 초안 대비 중국의 AI 산업에 대한 연구,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 및 지원 친화적 방향으로 수정
- **(영국) 자체적인 AI 규제 및 정책을 통해 글로벌 AI 규제 환경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강화.**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 채택. AI 글로벌 파트너십(GPAI,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)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협력 강화
 - 과학혁신기술부(DSIT, Department for Science, Innovation and Technology)는 **“친혁신적 AI 규제 접근책(A pro-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)”** 발표('23.3)
 - * AI의 혁신 촉진 및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5개 핵심 원칙 제시
 - ①안전·보안·견고성(safety, security and robustness), ②투명성·설명 가능성(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), ③공정성(fairness), ④책임·거버넌스(accountability and governance), ⑤경쟁 가능성·보상(contestability and redress)
 - AI 기술의 발전속도 및 다양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비례적인 규제 채택, 산업·학계·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AI 규제 개발, 공공 데이터의 개방 및 데이터 공유 촉진, AI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AI 기술인력 양성, AI 연구개발(R&D) 투자 확대, 혁신허브 설립 등
- **(일본) AI 규제를 위한 특별한 법률은 없으며, 예측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우선한다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간접적인 접근방식**
 - 日 정부는 기존의 3개 가이드라인을 통합·대체한 새로운 **“비즈니스 버전 1.0을 위한 AI 가이드라인”** 발표('24.4)
 - *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,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AI 원칙 준수 및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AI 시스템 개발자, 제공자 및 비즈니스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 지원을 유도
 - AI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AI 안전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직인 'AI Safety Institute'가 정보처리추진기구(IPA) 내 출범('24.2)

4. 우리나라 대응방향

- EU의 인공지능법 통과 및 주요국의 AI 규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, **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와 발맞추어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 마련 필요**
 - 우리나라도 인공지능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공지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잠재적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해 구속력을 갖는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기존 AI 기본법안은 1년 넘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됨
 - * 현재('24.7.2 기준)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총 5건(「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」(22대 국회 1호 법안),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」, 「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」 등)
 - 세계 각국이 AI의 기술패권 싸움에 나선 가운데, 국내의 AI 산업이 법/제도의 지연으로 경쟁국의 대응 속도에 빠르게 맞춰나갈 수 없다면 **주요 AI 경쟁국과 국내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격차는 점차 확대될 것**
 - * 현재 한국의 AI 경쟁력(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4, 스탠포드대) : (인구 10만 명당 AI 관련 특허) 1위, (AI 인재 집중률) 3위, (AI 기술 보급률) 9위, (민간투자) 9위, (AI 도입이 10년간 연간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) 10위
 - 인공지능 기본법도 중요하나, 이는 인공지능 산업의 규제를 위한 내용이 중점으로, **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산업부 차원의 지원법안을 조속 제정하여 AI의 발전 속도에 맞춘 육성법 마련 필요**
 - * (부처별 AI 관련 법/제도) (산업통상자원부) AI 산업활용 촉진법,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인공지능 기본법, (방송통신위원회)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, (개인정보 보호위원회) AI 개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, (문화체육관광부) AI 저작권 가이드라인

※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 이재진 선임연구원 / doublej@kiat.or.kr
 ※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